

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-34호

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. 8. 26.

임실군의회 의장



1. 제정이유

- 가. 국내 화재 사망자 중 대다수가 연기나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임
- 나. 이에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기관 및 시설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다. 교육 및 홍보, 예산지원,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(안 제4조~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부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)
- 다. 협 의 등 : 안전관리과
- 라. 입법예고 : 2024. 8. . ~ 2024. 8. .
- 마. 붙 임 : 조례안,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관계법령

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”(이하 “방연마스크”라 한다)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, 화학물질 증기 등의 유독가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품을 말하며,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

1.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에 따라 인증받은 재난안전제품
2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한국산업소방기술원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

제3조(방연마스크 비치 등) 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인명피해 방지와 임실군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,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.

1. 「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사무소 등
2. 임실군의회
3. 「임실군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

관

4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
5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
6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7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
8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9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10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

제4조(교육 및 홍보) 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사용 방법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사용을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5조(예산지원)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방연마스크 보급 및 확대,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 :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국민의 책무)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